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8 선고 2017가단201674 판결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자인관광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7. 5. 24

판결 선고 2017.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2. 3.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5. 2. 피고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입회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탈회신청서는 2016. 12.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2016. 12. 23. 으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호에서 정한 입회금 반환종료일 10일이 경과한 2017. 1. 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2. 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약관에서 회원은 입회기간 만료 30일 전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카드, 회원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탈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은 5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되고 회원은 5년간 탈회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약관 제11조는 '회원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퇴할 수 있다.

',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기간 만료 30일 전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카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원은 위에서 정한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탈회 신청이 없을 경우 입회기간 5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하여 이 기간 중 탈회신청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약관에는 회원이 입회보증금 거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자격 유지 여부를

존속시키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의 약관 제11조는 입회기간의 종료예고절차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탈회신청서 제출기간을 기간만료일 30일 전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기간은 입회기간 5년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짧다고 보이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약관 제11조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해성